

## 제1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 1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제 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제 3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업무



## 제1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 1. 설치배경 및 입법과정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저해요인들을 근절시키고 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1999년 3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제기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개정 의견에서 새로운 세기의 국정을 담당할 의원을 뽑는 제16대 총선이 선거문화 개혁의 획기적인 분수령이 되고 새롭고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그 동안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과 관리경험, 그리고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써 후보추천절차의 민주성, 선거범죄재판의 신속성, 여론조사 공표제한기간 단축, 선관위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선거보도의 공정성 제고를 법 개정의 주요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기사심의 관련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 벌칙조항 신설이었다.

개정안은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토록 규정했다. 또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신문·잡지·기타 간행물의 선거보도 불공정기사에 대한 자체심의,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반론보도의 결정기능을 갖고 언론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사의 편집·취재·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책임자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편집·취재·집필의 업무 종사를 정지시키도록 했다.

반론보도청구 조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11월 7일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고 선관위의 개정안을 법사위원회에 회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불공정보도를 한 언론인에 대한 1년 업무정지 규정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이 일자 12월 22일 선거관계법 소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어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불공정기사에 대한 조치사항은 재검토기로 결정하는데 이어 12월 23일 불공정기사에 대한 조치는 해당 기사내용에 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 게재로 한정하는 징계요구권의 삭제결정을 내렸다. 또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이 안은 국회본회의에 상정돼 2000년 2월 8일 가결, 2월 15일 공포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처벌규정 신설에 문제를 제기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이 주장하는 논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체형을 포함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은 법제정의 취지가 사이버언론의 횡포를 막고 언론피해구제절차를 단축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비판기능을 봉쇄하는 역기능을 갖고 있다는 데로 모아졌다.

언론은 언론중재위원회도 중재나 권고를 할 수 있을 뿐, 사법적 판단은 법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이유로 단심제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게 한 것은 언론의 선거감시와 보도기능이 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호라는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과문 게재명령은 1991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사죄광고의 강요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들어 위헌성을 제기했다.

## 제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제정

언론중재위원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의해 2000년 2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을 통과시켰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규칙은 2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문 21조로 제정된 규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3장 심의 및 시정, 제4장 반론보도청구, 제5장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이 규칙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 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와 국회교섭단체를 가진 각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언론인단체와 정당이 추천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해 가능한 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은 또 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보도된 선거기사에 대한 자체심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심의를 기본 업무로 규정하고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기준을 마련했다.

이 규칙은 심의위원회가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해 사과문과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해 이를 해당 언론사에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주의 또는 경고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기사에 대한 시정요구와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후보자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가 불공정 여부를 심의토록 했다.

### 2. 기사심의위원회 위원위촉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신문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새천년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에 각 1명의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한국언론학회는 윤석홍 단국대 언론학 교수, 대한변호사협회는 안영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한국신문협회는 남시욱 전 문화일보 사장,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특위위원장, 새천년 민주당은 유선영 법무법인 자하연 대표, 한나라당은 송효빈 한·일협력위원회 상임위원, 자유민주

연합은 이진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에 대해 당적 보유 유무 확인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들 7명과 함께 이창구 변호사, 이시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 모두 9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실에서 제1차 선거기사심의회의 겸 발족식을 갖고 호선에 의해 이창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윤석홍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위촉된 위원 중 이진우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3월 20일 자유민주연합이 추천한 고혜련 한국여성언론인협회 이사를 심의위원으로 재위촉했다.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위촉됐다. <표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표1>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추 천
이 창 구 (위원장)	1939.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 법학과 졸</li> <li>• 제2회 사법시험 합격</li> <li>•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li> <li>• 변호사(현)</li> <li>•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현)</li> </ul>	언론중재위원회
윤 석 홍 (부위원장)	1947. 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대 철학과 졸</li> <li>• 미주리대 언론학 박사</li> <li>• 단국대 언론학 교수(현)</li> </ul>	한국언론학회
송 호 빈	1933. 11.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세대 사학과 졸</li> <li>• 전 한국일보 편집부국장, 논설위원</li> <li>• 한일협력위원회 상임위원(현)</li> </ul>	한나라당
남 시 옥	1938. 4.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 정치학과 졸</li> <li>•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논설실장</li> <li>• 전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회장</li> <li>• 전 문화일보 사장</li> </ul>	한국신문협회
이 시 현	1938.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대 법학과 졸</li> <li>• 전 동아일보 문화부장, 논설위원,</li> <li>• 심의위원</li> </ul>	언론중재위원회
김 영 호	1944. 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희대 법학과 졸</li> <li>•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li> <li>•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개혁특위 위원장(현)</li> </ul>	언론개혁시민연대
안 영 도	1946. 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 법학과 졸</li> <li>• 제23회 사법시험 합격</li> <li>•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현)</li> </ul>	대한변호사협회
고 혜 련	1953.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화여대 국문과 졸</li> <li>• New Jersey 주립대 국제정치학 석사</li> <li>• 전 중앙일보 차장</li> <li>• 한국여성언론인연합 이사(현)</li> </ul>	자유민주연합
유 선 영	1962. 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 법학과 졸</li> <li>• 제27회 사법시험 합격</li> <li>• 법무법인 자하연 운영(현)</li> </ul>	새천년 민주당

### 3. 선거기사심의기준 제정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월 2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0조(심의) 규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제정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기사·표제 및 사진·광고보도심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권리구제에 대한 심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전문 5장 19조로 구성됐다. 심의기준은 제1장 「총칙」에서 공정성·형평성·객관성·공익성·정치적 중립 등 5가지의 가치추구를 규정하고 제2장 「기사」에서는 사실보도·사실과 의견의 구별·여론조사 보도·인용보도·인터뷰 기사·독자투고·특집 기획기사·대담 및 토론기사의 기준을 제시했다.

심의기준은 사실보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허위사실·비방 및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특히 선거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보도의 경우 보도기간과 보도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오차범위내인 경우 단정적 표현 금지, 그래프, 그림 등을 이용해 보도할 경우 경쟁자간 차이가 과장 및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다.

또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 출처를 명기하고 후보자의 발언이나 정당발표를 인용할 경우 전체 논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될 수식어의 사용을 금했다.

인터뷰 기사는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고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편집하도록 했으며 선거와 관련된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는 상반된 견해를 가능한 한 균형을 이뤄 보도하도록 명시했다.

선거기간 중 선거와 직접 관련 없는 경우에도 특정후보나 특정당에 불리 또는 유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기사의 게재를 금지했으며 대담·토론기사도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였다.

기사제목은 축소·과장·왜곡되지 않도록 규제했으며 사진게재는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보도하도록 했다. 또 사진게재는 변형이나 재구성으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지 않도록 했으며 유세장의 참가인원이나 내용도 왜곡하지 못하게 했다.

선거기사심의기준은 이 밖에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의 게재를 금지시켰다.

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기타 물품광고와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규제했으며 후보자의 성명·경력선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조항을 마련해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했다.

#### 4.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3월 3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의 운영방침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의 논의는 주의·경고·정정보도·사과문 게재로 구분된 제재의 수위를 조정하는데 맞추어졌다.

위원회는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 3 제3항에 규정된 사과문 게재명령과 관련 위원회가 결정으로 언론사에 이를 강제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정정보도 결정에도 신중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1991년 사과문 게재 요구 관련 민법조항에 대해 「사과광고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재판이라는 권력작용을 통해 자기의 신념에 반해 윤리적 판단을 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위헌판결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또 불공정 보도에 대한 별도의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과 관련해서 관련조항을 신중하게 적용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후보자가 선거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때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해당 언론인의 해명을 듣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이 심의위원회를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설치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체심의는 선거 후 언론이 선거기사심의대상인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선거종료와 함께 마무리하고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법정 시한까지 신청을 접수 심의하기로 했다.

## 제3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업무

### 1. 기사 심의기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선거기사심의에 들어가 4월 17일까지 모두 16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표2>

### 2. 기사 심의결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불공정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한다는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의 법제정 정신에 입각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심의기준에 따라 이를 위반한 기사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3월 7일 제4차 회의를 열어 경고 2건, 주의 2건 등 4건의 결정을 내린 것을 비롯해 제16차 회의까지 경고 58건, 주의 35건, 기각 1건 등 모두 94건을 심의결정했다. 경고는 전체 결정 건수의 61.7%, 주의는 37.2%를 각각 차지했다.

제4차 회의에서는 경고 2건 주의 2건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제5차 회의는 경고 1건 주의 8건, 제6차 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일지

<표2>

차 수	날 짜	내 용
제1차 회의	2월 25일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발족
제2차 회의	2월 28일	• 이창구 위원장·윤석홍 부위원장 선출
제3차 회의	3월 3일	• 선거기사심의기준 제정
제4차 회의	3월 7일	• 선거기사심의 운영방침 토론
제5차 회의	3월 10일	• 자체심의
제6차 회의	3월 14일	• 자체심의
제7차 회의	3월 17일	• 자체심의
제8차 회의	3월 21일	• 자체심의
제9차 회의	3월 24일	• 자체심의
제10차 회의	3월 28일	• 자체심의
		• 반론보도청구 심의
제11차 회의	3월 31일	• 자체심의
제12차 회의	4월 4일	• 자체심의
제13차 회의	4월 7일	• 자체심의
제14차 회의	4월 11일	• 자체심의
		• 시정요구 심의
제15차 회의	4월 14일	• 자체심의
		• 시정요구 심의
제16차 회의	4월 17일	• 시정요구 심의

의는 경고 1건 주의 6건, 제7차 회의는 주의 4건, 제8차 회의는 경고 6건 주의 1건, 제9차 회의는 경고 2건 주의 5건, 제10차 회의는 반론보도청구 기각 1건 경고 6건 주의 1건, 제11차 회의는 경고 7건 주의 2건, 제12차 회의는 경고 7건, 제13차 회의는 경고 10건 주의 1건, 제14차 회의는 경고 12건 주의 4건, 제15차 회의에서는 경고 4건 주의 1건이 각각 결정됐다. <표3>

경고 또는 주의 조치된 93건의 자체심의 결정을 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71건(7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론조사보도 요건미비 14건(15.1%),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7건(7.5%), 상업광고 제한 1건(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매체별로 보면 일간 신문이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에서 발행되는 주간신문 9건, 중앙에서 발간되는 주간신문 6건, 통신 및 주간지 각 1건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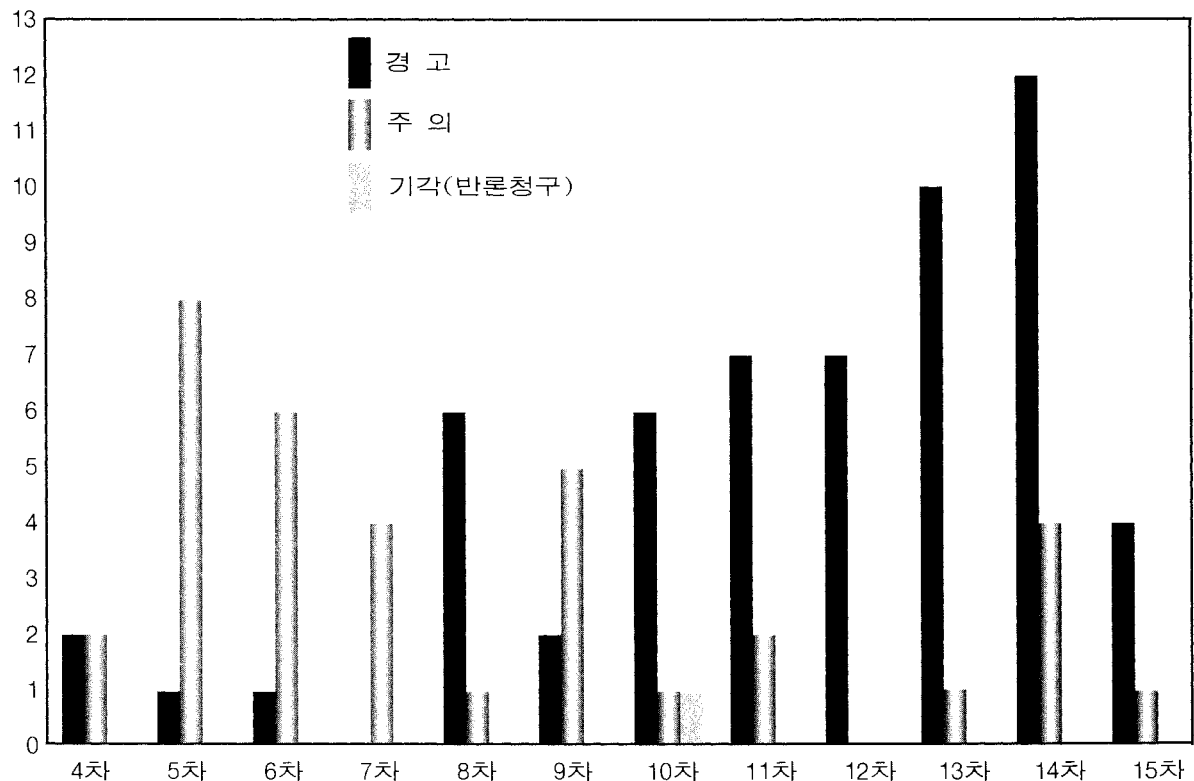
일간신문의 경우 지방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64건(84.2%)으로 중앙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12건, 15.8%)을 압도했다.

피해구제는 위원회의 자체심의, 후보자의 시정요구 사항과 반론보도청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체 심의는 위원회가 수집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에 대해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경고 및 주의 결정을 내렸다.

후보자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심의결과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체 신청건수 4건 모두 정정보도, 해명보도 및 사과문의

심의위원회 차수별 결정 추이

<표3>





자체심의회는 위원회 안에 설치된 행정지원팀이 전국에서 수집한 중앙일간신문, 지방일간신문, 주간신문 및 주간지, 월간지 등의 선거 관련 기사에 대한 선거기사심의기준 위반 사례를 매일 찾아내 이를 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심의안건의 개별 심의를 통해 선거기사심의기준 위반여부를 결정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결정내용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불공정한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통보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시정요구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심의절차를 거쳐 위반사항이 결정되면 자체심의회와 같은 절차에 따라 언론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후보자의 반론보도 신청의 경우 후보자가 1차로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요구하고 양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해당 후보자나 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건을 심의, 의결한 뒤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해당 언론사에 통보해 반론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기각 및 각하의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각각 통보토록 했다.

선거법은 또 언론사의 반론보도문 게재시한은 후보자의 게재청구를 받은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다음 호에 게재토록 했으며 다음 호가 선거일 후 발행·배부되는 경우 해당 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다른 일간신문에 48시간 이내에 게재토록 했다.

시정요구 신청은 지체 없이 심의, 의결하고 반론보도청구는 접수된 시점에서 48시간 이내에 심의, 의결토록 했다.

#### 4 . 심의대상매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국에서 발행되는 6000여종의 정기간행물 중에 구독 가능한 서울지역 발행 일간신문, 지방에서 발간하는 지방일간신문, 서울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주간신문·월간지, 지방에서 발간하는 주간지·주간신문 등 284종의 인쇄매체와 통신 등 총 285개 매체를 대상으로 제16대 총선 보도기사를 자체심의회했다. <표5>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45종, 경기 41종, 경남 31종, 경북 27종, 전북 25종, 충북 22종, 충남 21종, 전남 18종, 광주·강원 각 11종, 울산 8종, 대구·대전·제주 각 6종, 부산 4종, 인천 3종이었다.(주 배포 지역 구분)

전체 매체별로는 일간신문이 76종, 주간지·주간신문·월간지가 208종, 통신 1종이었다.

전체 심의대상 매체 중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는 모두 21종으로 그 가운데 종합지 10종, 경제지 4종, 스포츠지 4종, 영자지 2종, 전문지는 1종이었으며 통신은 1종이었다.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은 모두 55종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이 8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7종, 대구·대전·전북이 각 5종, 충북·경남 각 4종, 인천·울산·경북·제주 각 3종, 부산·강원 각 2종, 전남 1종이었다.

## 심의대상 매체현황

〈표5〉

지역	일간신문		주간지, 주간신문, 월간지, 통신	
서울(45)	21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대한매일, 세계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중앙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내외경제,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코리아헤럴드, 코리아타임스, 노동일보	24	뉴스메이커, 뉴스피플, 주간조선, 한겨레21, 뉴스위크, 주간동아, 시사저널, 주간한국, 한경비즈니스, 일요신문, 일요시사, 일요서울, 주간현대, 민주신문, 주간내일신문, 주간강동송파내일신문, 주간구로금천내일신문, 주간동부권내일신문, 월간조선, 신동아, 월간중앙, 말, 한국논단, 연합뉴스
부산(4)	2	부산일보, 국제신문	2	부산내일신문, 주간사하수요신문
대구(6)	5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광역일보, 영남투데이	1	주간대구내일신문
인천(3)	3	인천일보, 기호일보, 경도일보		
광주(11)	7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주매일, 전남매일, 호남신문, 광주타임스, 무등일보	4	주간광주전남내일신문, 광산신문, 광주북구신문, 광주남서신문
대전(6)	5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충남일보, 국도일보	1	주간대전내일신문
울산(8)	3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아침일보	5	주간울산내일신문, 울산신문, 울산여성신문, 울산월요신문, 울산종합신문
경기(41)	8	경인일보, 경기일보, 경인매일, 수도권일보, 경기도민일보, 중부일보, 현대일보, 전국매일	33	주간이천내일신문, 주간안산내일신문, 주간수원내일신문, 주간안양내일신문, 주간성남내일신문, 주간의정부내일신문, 주간김포내일신문, 주간광명내일신문, 주간분당내일신문, 주간가평내일신문, 주간군포내일신문, 주간부천시민내일신문, 주간일산내일신문, 대안신문, 주간고양신문, 주간안산신문, 주간수원신문, 주간김포신문, 주간부국신문, 용인신문, 주간세종신문, 이천신문, 평택시민신문, 주간파주신문, 주간민안신문, 과천시대신문, 경기자유신문, 주간동두천신문, 분당뉴스, 주간의정부신문, 가평타임즈, 주간부천자치신문, 양평백운신문
강원(11)	2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9	주간원주내일신문, 주간춘천내일신문, 영월저널, 주간강릉신문, 주간강원북부신문, 주간삼척신문, 주간설악신문, 주간영서신문, 주간태백신문
충북(22)	4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한빛일보	18	주간청주내일신문, 충청리뷰, 충주신문, 주간예성신문, 주간제천신문, 주간보은신문, 주간옥천신문, 주간진천신문, 주간증평괴산신문, 음성신문, 충주타임즈, 제천21, 영동신문, 영동생활뉴스신문, 삼군신문, 진천군민신문, 주간괴산신문, 증평신문

지 역	일 간 신 문		주간지, 주간신문, 월간지, 통신	
충남(21)			21	주간천안내일신문, 공주신문, 논산신문, 당진시대, 보령신문, 천안신문, 금산신문, 부여신문, 서천신문, 연기신문, 예산신문, 태안신문, 홍성신문, 서령신문, 대산신문, 온양신문, 온주신문, 금산저널, 뉴스서천, 무한정보신문, 뉴스청양
전북(25)	5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주일보, 전북제일신문, 전북매일	20	주간전주전북내일신문, 주간군산내일신문, 주간익산내일신문, 주간전북남서부내일신문, 주간정읍내일신문, 고창코리아, 김제시민의신문, 새익산신문, 주간남원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주간남원민보, 주간정읍신문, 전북일요시사, 주간고창신문, 서남신문, 전북타임즈, 주간김제신문, 주간서림신문, 주간진포신문
전남(18)	1	전광일보	17	주간목포내일신문, 여수신문, 예향진도신문, 주간강진신문, 주간나주신문, 주간전남동부신문, 주간해진신문, 주간화순신문, 주간고흥신문, 주간영광신문, 진남신문, 곡성신문, 광양신문, 주간목포신문, 주간순천신문, 주간완도신문, 주간진도군민신문
경북(27)	3	경북매일, 신경북일보, 일간경북	24	주간구미내일신문, 주간안동내일신문, 주간경산향토신문, 주간김천신문, 주간고령성주신문, 주간경북북부신문, 주간경주신문, 새재신문, 양백신문, 우리군민신문, 주간울진신문, 주간경북중부신문, 대한영남신문, 주간의성신문, 주간영천신문, 주간청도신문, 주간경산자치신문, 주간경북자치신문, 주간영천조양신문, 주간안동신문, 주간영덕신문, 주간군위신문, 울진자치신문, 주간고향신문
경남(31)	4	경남신문, 경남일보, 가야일보, 경남도민일보	27	주간마산창원내일신문, 거제신문, 김해가야신문, 주간하동신문, 주간거제시민신문, 주간거창신문, 주간고성신문, 주간남해신문, 주간진주신문, 밀양신문, 밀양연대신문, 주간밀양시민신문, 새하려신문, 서경신문, 주간아림신문, 주간천령신문, 주간하산신문, 주간함양신문, 주간합천신문, 통영시민신문, 함안신문, 함안아라신문, 와룡신문, 비사별신문, 새거제, 황강신문, 창원신문
제주(6)	3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3	제주타임스, 서귀포신문, 제주정경
계(285)	76		209	

서울을 주배포처로 하여 발간되는 주간지·주간신문·월간지는 모두 23종으로 이 가운데 주간지는 9종, 월간지는 5종이었다.

지방을 주배포처로 하여 발간되는 주간신문은 모두 185종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가 33종으로 가장 많

서울 사무처 심의대상 매체

〈표6〉

중앙일간신문	지방일간신문	주 간 지	주 간 신 문	월 간 지	통 신
경향신문 국민일보 대한매일 노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가야일보, 강원도민일보 경기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 경남신문, 경도일보 경북매일, 경상일보 경인매일, 경인일보 광역일보, 광주매일 광주일보, 광주타임스 국도일보, 국제신문 기호일보, 대구일보 대전매일, 대전일보 동양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수도권일보 신경남일보 신경북일보 영남일보 영남투데이 울산매일, 울산아침일보 인천일보 일간경북, 전광일보 전국매일, 전남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매일, 전북일보 전북제일신문 전주일보, 제민일보 제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남일보, 충청일보 한라일보, 한빛일보 현대일보, 호남신문	뉴스메이커 뉴스위크 뉴스플러스 뉴스피플 시사저널 주간조선 주간한국 한겨레21 한경비즈니스	가평내일신문 강동송파내일신문 광명내일신문 광주전남내일신문 구로금천내일신문 구미내일신문 군산내일신문 군포내일신문 김포내일신문 대구내일신문 대전내일신문 동부권내일신문 마산창원내일신문 목포내일신문 민주신문 부산내일신문 부천시민내일신문 분당내일신문 성남내일신문 수원내일신문 안동내일신문 안산내일신문 안양내일신문 울산내일신문 원주내일신문 의정부내일신 이천내일신문 익산내일신문 일산내일신문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전북남서부내일신문 전주전북내일신문 정읍내일신문 주간내일신문 주간현대 천안내일신문 청주내일신문 춘천내일신문	말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한국논단	연합뉴스
21종	55종	9종	40종	5종	1종

※ 총 131종

지역사무소 심의대상 매체

〈표7〉

지 역		매 체
부 산 (5)	부 산	주간사하수요신문(1)
	울 산	울산신문, 울산여성신문, 울산월요신문, 울산종합신문(4)
대 구 (22)	대 구	
	경 북	주간경산향토신문, 주간김천신문, 주간고령성주신문, 주간경북북부신문, 주간경주신문, 새재신문, 양백신문, 우리군민신문, 주간울진신문, 주간경북중부신문, 대한영남신문, 주간의성신문, 주간영천신문, 주간청도신문, 주간경산자치신문, 주간경북자치신문, 주간영천조양신문, 주간안동신문, 주간영덕신문, 주간군위신문, 울진자치신문, 주간고향신문(22)
광 주 (19)	광 주	광산신문, 광주북구신문, 광주남서신문(3)
	전 남	여수신문, 여향진도신문, 주간강진신문, 주간나주신문, 주간전남동부신문, 주간해진신문, 주간화순신문, 주간고흥신문, 주간영광신문, 진남신문, 곡성신문, 광양신문, 주간목포신문, 주간순천신문, 주간완도신문, 주간진도군민신문(16)
대 전 (20)	대 전	
	충 남	공주신문, 논산신문, 당진시대, 보령신문, 천안신문, 금산신문, 부여신문, 서천신문, 연기신문, 예산신문, 태안신문, 홍성신문, 서령신문, 대산신문, 온양신문, 온주신문, 금산저널, 뉴스서천, 무한정보신문, 뉴스청양(20)
경 기 (20)		대안신문, 주간고양신문, 주간안산신문, 주간수원신문, 주간김포신문, 주간부곡신문, 용인신문, 주간세종신문, 이천신문, 평택시민신문, 주간파주신문, 주간민안신문, 과천시대신문, 경기자유신문, 주간동두천신문, 분당뉴스, 주간의정부신문, 가평타임즈, 주간부천자치신문, 양평백운신문
강 원 (7)		영월저널, 주간강릉신문, 주간강원북부신문, 주간삼척신문, 주간설악신문, 주간영서신문, 주간태백신문
충 북 (17)		충청리뷰, 충주신문, 주간예성신문, 주간제천신문, 주간보은신문, 주간옥천신문, 주간진천신문, 주간증평괴산신문, 음성신문, 충주타임즈, 제천21, 영동신문, 영동생활뉴스신문, 삼군신문, 진천군민신문, 주간괴산신문, 증평신문
전 북 (15)		고창코리아, 김제시민의신문, 새익산신문, 주간남원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주간남원민보, 주간정읍신문, 전북일요시사, 주간고창신문, 서남신문, 전북타임즈, 주간김제신문, 주간서림신문, 주간진포신문,
경 남 (26)		거제신문, 김해가야신문, 주간하동신문, 주간거제시민신문, 주간거창신문, 주간고성신문, 주간남해신문, 주간진주신문, 밀양신문, 밀양연대신문, 주간밀양시민신문, 새한려신문, 서경신문, 주간아림신문, 주간천령신문, 주간한산신문, 주간함양신문, 주간합천신문, 통영시민신문, 함안신문, 함안아라신문, 외통신문, 비사벌신문, 새거제, 황강신문, 창원신문
제 주 (3)		제주타임스, 서귀포신문, 제주정경

※ 총 154종

있으며 경남 27종, 경북 24종, 충남 21종, 전북 20종, 충북 18종, 전남 17종, 강원 9종, 울산 5종, 광주 4종, 제주 3종, 부산 2종, 대구·대전 각 1종이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서울 사무처에서 심의한 매체는 모두 131종으로 중앙일간지 21종, 지방일간지 54종, 주간지 9종, 주간신문 40종, 월간지 5종, 통신 1종이었다. <표6>

지역사무소는 각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간신문을 대상으로 선거기사를 심의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26종, 대구 22종, 대전·경기 각 20종, 광주 19종, 충북 17종, 전북 15종, 부산 5종, 제주 3종이었다. <표7>

이외의 정기 간행물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시정요구나 반론보도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심의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제16대 총선 보도 기사심의안을 심의하고 있다.

## 5. 실무 지원행정.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에 모두 35명의 정규 직원 및 임시 직원을 심의 및 행정지원 요원으로 투입했다.

투입된 인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전문위원 3명, 중재심의실 심의2팀장 및 직원 4명, 임시직 7명, 지역사무소 파견직원 20명이다.

심의활동은 행정편의상 심의2팀을 한시적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심의 및 행정처리는 이병훈 사무총장을 정점으로 임병국 중재심의실장이 총괄하고 오광건 심의2팀장이 주관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심의2팀은 심의를 전담하는 3개조(A조·B조·C조)와 행정서무를 담당하는 부서 등 4개 부서로 구성되었다.

A조는 김굴근 전문위원, B조는 강대형 전문위원, C조는 주길치 전문위원이 맡아 각 조에 임시직 각 2명을 배치하고 각 3명의 정규 행정요원을 추가해 배치했다.

전문위원은 각 조의 선거기사심을 전담하여 할당 매체에 대한 심의와 심의안전작성 및 임시직 심의 안전을 감수하는 책임을 부여했다.

정규직원은 류석창, 김주용, 김문성, 이재범 등이며 임시직은 종합일간신문사 기자 경력이 있는 6명과 컴퓨터요원 1명이 종사했다.

10개 지역사무소의 심의는 사무소장이 있는 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전북은 소장이 주관하고 사무소장이 없는 강원·청주·창원·제주 지역은 사무처 직원을 지역별로 1명씩 출장형식으로 파견해 심의를 실시했다.

제1차 출장에는 선거기사심의의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팀장급을 투입했으며 피해구제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선거기간 중에는 사무처 내에 각 팀에서 선임급 직원을 차출했다.

출장 직원 중 팀장 및 선임급 직원은 장원상 심의1팀장, 권우동 조사연구팀장, 임득상 기획부차장, 이미경 심의1팀차장, 조남태 조사연구팀차장이며 일반 직원은 여종국, 손정배, 안백수, 최영훈, 조준원, 임종우, 이수종, 여운규, 박해진 등이다. □